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31 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O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조례안 제1조 수정
 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인용조문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"를 "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저출산</u>	제1조(목적) <u>「저출산</u>
・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의	・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제1
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	<u> </u>
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	
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	
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	
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	
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.</u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관계 법령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